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401 발의연월일: 2022. 1. 14.

발 의 자:서일준·김승수·김용판

박 진・양금희・윤한홍

이 용・이주환・조명희

최형두 · 추경호 · 하영제

홍문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,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특례시)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・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마리나업을 하려는 자 및 마리나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. 또한 휴·폐업·재개업 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함.

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리나업의 등록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, 등록 취소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도적으로 행정사무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, 제33조의2, 제38조 및 제41조).
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시·도지사"로 한다.

제28조의3제3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시·도지사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은"을 "시·도지사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이"를 "시·도지사가"로 한다.

제28조의4 본문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시·도지사"로 한다.

제28조의5제1항 전단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시·도지사"로 한다.

제2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해양수산부장관은"을 "시·도지사는" 으로 한다.

제2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해양수산부장관은"을 "시· 도지사는"으로 한다.

제33조의2제1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은"을 "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 도지사는"으로 한다.

제38조제3호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시·도지사"로 한다.

제41조제3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이"를 "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」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3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,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의2(마리나업의 등록 등)	제28조의2(마리나업의 등록 등)
① 마리나업 중 다음 각 호의	①
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<u>해양수산</u>	<u>시 • 도지사</u>
<u>부장관</u>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	
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	
경우에도 또한 같다.	<u>.</u>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8조의3(마리나업의 승계 등)	제28조의3(마리나업의 승계 등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	③
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	
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에게 신고	<u>시·도지사</u>
하여야 한다.	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	④ <u>시·도지사는</u>
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	
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	
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
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	⑤ <u>시·도지사가</u>
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	
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	

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
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
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
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
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
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
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28조의4(휴업 또는 폐업의 신
고) 등록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
부 또는 일부를 휴업・재개업

제28조의4(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) 등록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·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15일 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8조의5(등록사업자의 의무)
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
금 및 이용조건 등(이하 "이용
약관"이라 한다)을 정하여 <u>해</u>
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
하며,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
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
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
한다.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

제28조의4(휴업 또는 폐업의 신
ュ)
<u>시 • 도지사</u>
제28조의5(등록사업자의 의무)
①
<u>시·도지사</u>

또한 같다.

② ~ ③ (생 략)

제28조의6(시정명령) <u>해양수산부</u> <u>장관은</u>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요금반환, 위반행위 중 지,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제28조의7(등록취소 등) ① <u>해양</u> 수산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~ 9. (생략)

② (생략)

제33조의2(검사·확인 등) ① <u>해</u> 양수산부장관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28조의6(시정명령) <u>시·도지사</u>
<u>L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28조의7(등록취소 등) ① <u>시·</u>
도지사는
1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33조의2(검사·확인 등) ① <u>해</u>
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・도지사
<u>는</u> <u>는</u>

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금 마리나선박이나 관 련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·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 제3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· 2. (생략)
 - 3.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

4. (생략)

제41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· 징수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제38조(벌칙)
1.·2. (현행과 같음)
3
시 · 도지사
4. (현행과 같음)
제41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③
<u>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</u>
도지사가